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657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6573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3418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2. 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341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9. 4. 29. 접수 제190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의 형제인 G 소유의 부동산으로, G가 사망한 후 피고와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C의 상속지분 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처분하여 매매대금 중 기존 F조합의 대출금 및 상속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H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가, 피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F조합에서 피고의 대출금 채무인수를 거절하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0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위 3/4 지분에 못 미치는 5,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G가 2014. 2. 27. 사망한 후 2019. 3. 4. 피고와 C의 형제인 I의 대습상속인 H,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이후 2019. 9. 30.까지 처분하여 매매대금 중 F조합의 대출금 및 상속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H에게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할 시에는 2019. 10. 31. 안에 우선 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추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도할 경우 서로 다시 정산하여 상호지급하며, 피고가 약속된 기일까지 지급 불이행 시 모든 책임은 C에게 위임하여, 그 내용을 보증인인 C가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 및 2019. 3. 4. G의 공동상속인인 J, H, K, L(이상 피고와 C의 형제인 M, I의 각 대습상속인),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B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위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단독소유자를 C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신용문제로 대출금 채무인수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를 당초의 합의에 따른 피고에서 C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합의각서 상 H를 제외하고 C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포기 여부 및 정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C는 피고의 H에 대한 정산의무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그 외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 등 나머지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 및 정산 의무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3/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

별지